

복수학위 과정에 관한 규정

제 정 2007. 3.
 개 정 2010. 6.
 개 정 2015. 10.
 개 정 2017. 8.
 개 정 2017. 11.
 개 정 2019.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7조 등에 의거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이하 '대상 대학'이라 한다)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과정 등의 복수학위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8.28.)(개정 2019.11.26)

제2조 (지원자격)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08.28)

1. 외국대학 복수학위과정의 경우 국외여행 및 수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본교에서 1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대상 대학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

제3조 (지원서류)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08.28)

1. 복수학위 수학계획 및 추천서
2.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 (선발절차 및 소관부서) ①소속 학과(부)장은 지원자의 수강계획 등을 검토하여 복수학위과정 이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개정 2017.08.28)

②복수학위과정 관련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로 정하고, 각 주관부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08.28)

1. 국내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은 교무처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2.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은 국제교류원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③총장은 적격 유무를 판단하여 복수학위과정 이수자를 선발한다.

④(삭제 2017.08.28)

제5조 (수학기간) 복수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본교와 대상 대학 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7.08.28.)

제5조의2 (교육과정 운영) 대상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1.14.)

1. 각 대학의 자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취득을 상호 인정하여 참여대학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2.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여 참여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3.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개설·운영하는 대학의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참여대학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4. 기타 총장이 승인하고 대상 대학과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과정

제6조 (수강계획 허가) ①복수학위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 대학의 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8.28)

제7조 (등록 학기의 인정) ①복수학위 과정을 허가 받은 학생은 해당학기 개시 전까지 본교 또는 대상 대학에 등록을 하면 본교의 수강신청 및 등록 학기로 인정한다.(개정 2017.08.28)

②(삭제 2017.08.28)

제8조 (학점의 인정) ①복수학위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졸업기준 전체 학점의 4분의 3 범위 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그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로 제한 한다.(개정 2017.08.28)

②(삭제 2017.08.28)

③학생은 대상 대학의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학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부)에서는 제4조5항 각 호에서 정한 관련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관련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28)

④(삭제 2017.08.28)

⑤교무처는 복수학위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학적부에 등재한다.(개정 2017.08.28.)

⑥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통한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과정의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9.11.26)

1. 국내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경우

·국내대학 각각의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이수 인정 가능

2. 국내대학-외국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경우

가. 국내대학 소속 학생: 국내 및 외국대학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각 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인정 가능

나. 외국대학 소속 학생: 국내 대학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인정 가능

제9조 (등록금 및 장학지원) ①(삭제 2017.08.28)

②복수학위과정의 등록금은 본교와 대상 대학과의 협약에 근거하여 정해진 대학에 납부한다.(개정 2017.08.28)

③(삭제 2017.08.28)

④(삭제 2017.08.28)

⑤ 복수학위자의 등록금 및 장학지원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08.28)

제10조 (학적관리) ①복수학위과정 이수자의 선발, 중도포기, 이수완료 등이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을 제4조5항 각 호에서 정한 관련 주관부서에서 처리한다.(개정 2017.08.28)

②학생은 복수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08.28)

③제2항에 따라 복수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잔여학점의 취득 등 졸업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7.08.28)

제10조의2 (학위수여)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대상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본교의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7.08.28)

부 칙(2017.0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미 승인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제반 사항을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완 조치한다.(개정 2017.08.28)

제3조 (삭제 2017.08.28)

부 칙(2010.06.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5조의2 신설 규정은 2017학년도 2학기 복수학위과정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